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시정권고)

□ 민원 제목 : 서초구청에서 운영하는 청년사업의 나이제한 문제점 개선요청

□ 신청 취지

- 서초구 보건소 사업중 1인가구 청년세대 건강검진 년1회 제공시 청년의 연령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요청
- 청년법에서는 34세까지 청년으로 정의하나, 군필자에 한하여 대부분 군복무기간을 소급하여 36세에서 39세까지 정하고 있음
- 서초구청 보건소 사업 중 1인가구 청년세대에게 건강검진 연1회 제공 시 34세까지만 규정짓고 군복무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요청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청년서초 건강검진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한 청년 맞춤형 검진임
- 대 상 : 만19세~만34세 서초청년(1인가구만 해당)
- 검진내용 : 간·신장기능검사, 갑상선기능, 암표지자(남 4종, 여 5종), A형간염, 흉부방사선 촬영등 실시 (검진비 연1회 무료)
- 기 타 : 2023년 행복서초 건강검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완료 (2024년부터 만38세까지 검진대상 확대 검토)

□ 사실관계

- 2023. 행복서초 건강검진사업 계획에서는 청년 서초 건강검진 대상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복서초 프리미엄 건강검진 대상을 4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34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음

- 특히,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더라도 대상자 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시행이 가능할 것임

□ 관계 법령 등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1.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판단 및 결론

- 결론 : 시정권고

- 2023. 행복서초 건강검진사업 계획 중 청년 서초 건강검진 계획에 따른 검진대상을 수정하여 2023년부터 39세 이하인 사람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처리결과 : 서초구 보건소는 서초구 읍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함

- 검진대상 : 청년서초 건강검진 사업의 검진대상을 기존 만 19세 ~ 만 34세 이하 1인가구 서초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1인가구 서초청년으로 검진대상을 확대하여 시행
- 검진장소 : 서초구 보건소, 방배보건지소
- 시 행 일 : 2023. 4. 3.(월)